

의안번호	제 779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3월 14일

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의안
번호

779

제출연월일 : 2018년 3월 1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투자진흥기금의 산업단지용도변경 기부수입을 수입계획에 계상하고 이자수입을 변경하여 그에 따른 금융기관 예치금을 증액하고자 함.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의 규정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에 따라 2018년도 충청북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)

기 금 명	2017년도말 조 성 액	2018년도 운용계획				2018년도말 조 성 액
		당초		변경		
		수 입	지출	수 입	지 출	
투자진흥기금	2,773	172	100	5,382	100	8,055

3. 의안전문 : 첨부(2018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)

4. 관계법령 발췌 : 불임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7.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7.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